

폭염에 '열사병 의심' 노동자 잇단 사망

'직업성 질병'...아직 중대재해 적용 사례 없어 오늘부터 폭염대응 특별 단속, 신고기간 운영

3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터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지난해보다 18일 일찍 격상되는 등 이른 무더위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3시55분께 한 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에 화물을 싣던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작업 장소에서 이탈했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2일 오후 4시35분께 경기 시흥시 한 건설 현장에서는 퇴근하던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기온이 32.8도에 이르던 4일 대전 유성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같은 날 낮 12시20분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했으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해 변을 당했다.

또 5일 낮 12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건설 현장에서 오전 작업 후 사라졌던 노동자가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열사병은 법에 따른 중대재해에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거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

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최근 폭염으로 열사병 의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는 아직 없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여름철(6~8월)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의 69.0%는 건설업에서 나왔다.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 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폭염 기간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망 사고가 3건 나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폭염 기간에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 현장, 조선소, 물류센터, 제철소 등 온열질환 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단속 기간 동안 상시로 패트롤(순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3가지다.

첫째로 노동자에게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 무더운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실내 작업장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에게 보령(냉) 장구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고열과 같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가 생길 경우, 옥외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노동자 본인이 고열자 등 온열질환

에 취약하거나,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한다면 작업 전·후 동료와 함께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온열질환 전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의심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응급조치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119에 즉시 구조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열사병 예방조치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을 엄격히 관리한다.

현장 노동자는 특별신고 기간 중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고용 당국은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한 사업주는 의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도시민 대상 조종면허 출장 필기시험 시행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도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완도군 노화읍 노화수협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 필기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폐쇄 등 행위 합동점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8월 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구와 비상구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피난동선 확보 등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7월 5일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담양경찰, 보행자 통행권 위협하는 PM 단속 강화

담양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경찰,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장 내 불법카메라 점검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성범죄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난 5일 물놀이장(중흥골드스파&리조트) 내 불법카메라 점검점검을 실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보성경찰 '안전한 보성만들기' 감사장 수여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지난 7일 '안전한 보성만들기'를 위한 마을방범 CCTV 확충 시책에 적극 협조한 보성강수력발전소에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강진경찰, 중앙초 찾아가는 진로체험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7일 강진중앙초등학교에 진출하여 미래 경찰관을 꿈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 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전남교통안전공단, '굉음 질주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오는 12월까지 집중 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새벽시간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에 굉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개조 이륜차이다.

또 미인증 등화 장치설치, 경음기 추가, 번호판 불량 이륜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도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형사처벌·행정처분 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

하, 소음조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상반기 총 20회 합동 단속을 실시해 367대를 적발했다. 등화장치 269대, 불법튜닝 63대, 번호판 불량 204대, 기타 67대이며 특히 소음 조과 차량도 12대를 단속했다.

이슬비기자

"총알에 가위·칼까지?"...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급증

6월 위해물품 적발 11만7843건...전년비 3배 ↑



"승객 가방에 총알이 있는 것으로 의심 됩니다."

지난달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환승객의 가방을 확인하던 A대원은 엑스레이(X-ray) 판독 사진에서 작은 크기의 무언가를 발견했다. A대원은 승객 가방의 X-ray 사진을 유심히 보고서는 단숨에 총알인 것을 직감했다.

A대원은 상부와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보고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 대원들이 출동해 해당 승객의 가방에서 실탄 1발을 발견했다.

이 승객은 미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는 환승객이었다. 이 승객이 출국한 해당 공항에서 실탄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국을 승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승객은 사적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승객은 해당 실탄을 포기한 후 목격자로 향할 수 있었다.

올 하계 성수기(7월22일~8월10일)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하계 성수기기간 해외 여행객이 현재 일일 5만명에서 8만562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항보안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1만78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만6552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적발 물품으로는 액체류가 ▲10만 1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위·칼 7199건 ▲라이터 6213건 ▲야구 방망이와 공구 등 스포츠용품 1472건 ▲폭발 인화성류 48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탄(11건)과 도검(1건), 전자총격기(7건) 등 안보위해물품도 18건이나 적발됐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크게 ▲안보위해 물품 ▲일반위해 물품 ▲액체 및 젤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안보위해물품은 총기와 실탄, 도검류와 전자총격기 등이며 일반위해물품은 모사총기류, 가위 및 칼, 공구(망치, 렌치 등), 아령과 야구방망이 등 스포츠용품, 라이터, 폭죽 등이 있다.

또한 적발량이 가장 많은 액체 및 젤류는 김치와 화장품, 장류(고추장, 된장), 세면용품(치약 및 샴푸 등), 액체 흉상, 헤어스프레이, 음료 등이어서 출국 전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 중 전체 86%를 차지하는 액체류는 용기기준 100ml 초과시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수하물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라이터나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휴대해야 하고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면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헛갈리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사전에 액체류 등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공항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